
제7회 김홍도축제 행사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제7회 김홍도축제 행사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I 과업목적

제7회 김홍도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 총괄 기획, 축제장 조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과 풍부한 경험, 역량을 갖춘 과업수행자를 선정

II 축제개요

1. 축 제 명 : 제7회 김홍도축제
2. 기 간 : 2026. 10. 23.(금) ~ 10. 25.(일) / 3일간
3. 장 소 : 화랑유원지(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70)
4. 주최/주관 : 안산시/안산문화재단
5. 주요내용 : 기획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
 - (기획프로그램)
 - : 개막식(개막 퍼포먼스, 개막 공연 등), 폐막식(초청가수, 불꽃놀이 등)
 - ※ 불꽃놀이: 발주처 별도 운영
 - (체험프로그램)
 - : 김홍도 풍속촌, 승마체험(승마체험은 발주처 별도 운영) 등
 - (참여프로그램)
 - : 김홍도 사생대회, 한복&다도체험, 포토존
 - ※ 상기 축제내용에 대하여 제안 업체 추가 기획 제안 가능
6. 예상 관람객 수: 130,000명 / 제6회 김홍도축제 관람객수 135,870여 명

III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제7회 김홍도축제 행사대행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월)까지
 - ※ 결과·평가보고서 등 제출기한 : 행사종료일로부터 4주 이내
3. 과업장소 : 화랑유원지(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70)
4. 사 업 비 : 금285,000천원(금이억팔천오백만원, VAT 포함)
5. 과업범위 : 축제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운영(안전관리 포함), 홍보, 축제장 설치

및 철거 전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운영 결과 보고 등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IV 과업범위

1. 축제 진행 · 관리 축제 운영 전반

※ 출연진 및 기타 참여단체 섭외(모집)의 경우 재단에서 직접 진행하며 계약 대행 및 출연료 지급 요청

2. 무대 조성, 장비 임차, 프로그램 제작, 상황실, 홍보, 부대행사 부스 설치 등 축제장 구성 및 관리(세부실행계획 작성 · 제출)

3. 축제 운영에 참여하는 인력 선발 및 운영

4. 축제장 안전관리 재해대처계획 수립

- 1) 관람객 및 출연자 등 축제 참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 사후처리 일체
- 2) 안전요원 배치 등 현장 안전 책임
- 3) 우천 등 기상 악화 대비책 마련 등

5. 각종 현수막 등 제작

6. 축제의 기록을 위한 원본 사진 및 영상(현장 및 드론) 촬영 · 관리

7. 축제 결과보고서 작성 · 제출

8. 기타 축제 준비 및 진행과 관련하여 재단이 지정하는 사항 등

V 과업 추진체계

구 분	내 용
안산문화재단	- 행사 총괄 및 프로그램 기획 - 공연단체 및 참여단체 섭외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계획 수립 및 이행 - 현장 관리 - 행사 홍보 전략 수립 및 실행 - 운영 대행사 관리·감독 및 준공
운영 대행사	- 안산문화재단의 관리·감독에 따른 행사 세부 운영방안 구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재해대처계획 수립·관리 - 행사장 공간 세부 구성 및 운영방안 수립·관리 - 행사 전담 인력 구성 및 인력 운영방안 수립·관리

구 분	내 용
	- 행사 참여 유관기관 및 예술단체 등 현장 관리 - 프로그램 기술 협의 및 시스템 구성·운영 - 프로그램 실행 및 현장 관리·운영 - 시설물 원상복구 - 용역수행 결과보고 - 기타 행사 운영 관련 사항

VI 과업 세부내용

1. 행사장 배치도



2. 과업 세부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기획 및 기본사항	○ 축제 전반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축제진행계획 일정 및 일자별 공연 테마 및 출연진 구성 ▲ 축제진행에 필요한 무대 등 장비 임차 등 관리계획 ▲ 관람객 동선 관리 등 축제장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계획 작성 ○ 축제 목적 및 장소의 특성을 고려한 전체 콘셉트 기획 ▲ 김홍도의 풍속화를 바탕으로 한 김홍도 풍속촌 조성 ○ 타 지역 축제와 차별성 있는 축제가 되도록 기획·운영 ▲ 김홍도의 일생 또는 작품을 주제로 한 공연 기획 ▲ 김홍도를 주제로 한 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실현 가능성 있는 세부적인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내역 보고 ○ 안전메뉴얼(재대해처계획서) 작성 ○ 고객 만족도 조사 ○ 축제 전반에 필요한 모든 보고 및 문서 일체(실행계획, 큐시트 등) ○ 축제 추진 시 발주처와의 사전 협의 확행 ○ 축제 전반에 관한 기록(사진 / 영상: 현장영상, 드론영상 포함) ○ 제안서에 제시된 모든 내용은 입찰금액 내에서 실행 가능으로 간주

구 분	세 부 내 용
공연 및 행사	○ 공연 프로그램 ▲개·폐막 콘셉트에 따른 섭외 가능한 가수 제시, 각 2팀 이상 ※ 대중가수는 발주처와 최종 협의 하고 발주처가 섭외 진행한 가수로 행사가 진행될 시 계약 및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김홍도의 작품 및 생애를 주제로 한 공연 및 축제 컨셉에 맞는 공연 제시 ex) 줄타기, 전통 농악 공연, 전통 퓨전(국악, 비보잉) 공연 등 ○ 체험 전시 프로그램 ▲김홍도 풍속촌 및 전통놀이터 • 김홍도의 시대 및 풍속화를 재현한 공간 구성(6동 이상) • 전통놀이, 베틀체험 등 별도의 전통 놀이공간 조성 ▲한복(100벌 이상) 체험 운영 / 예)경복궁 한복 체험 참조 ▲축제장 분위기 조성 및 인증샷 장소 제공(포토존, 상징물 등) ▲축제 컨셉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 제시 가능 ▲김홍도 미디어 전시 프로그램 운영 및 구성 •김홍도의 풍속화 미디어 전시 프로그램 설치 및 구성 제시 ○ 기타 프로그램 ▲장소(사생대회, 플리마켓, 농특산물 마켓) 구성 제안 ▲김홍도 사생대회 운영: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및 협조 필수 -물품 설치 및 안전관리 등 현장 운영만 진행 ▲플리마켓 운영(시설물 지원):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및 협조 필수 -물품 설치 및 안전관리 등 현장 운영만 진행 ▲농특산물 마켓 운영(시설물 지원):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및 협조 필수 -물품 설치 및 안전관리 등 현장 운영만 진행
주무대 (무대설치)	○ 무대디자인 : 김홍도 축제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무대 시안 제시 ○ 무대SIZE : 가로15m×세로15m 이상 ○ 무대 좌·우 : 영상(LED) 및 거치를 위한 구조물 ○ 레이어 및 그 이상급의 구조물로 설치(트러스 구조물 포함) ○ 카메라 및 스피커(플라잉) 구조물 설치 ○ 출연자 대기실 부스 설치, 기타 무대 필요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주무대 (시스템)	○ 조명 ▲무빙라이트 50대(spot, wash 등) 이상 ▲RGBW 컬러 믹싱이 가능한 LED 무빙라이트 연출 ▲다양한 조명 및 디자인 필요 ▲기타 조명 필요사항 ○ 음향 ▲라인어레이 메인스피커 출력 50KW(플라잉필수, 방수가능) (우퍼 스피커는 메인스피커 출력과 맞추어 4통 이상 설치) ▲모니터스피커 1KW이상/10개 이상 ▲디지털 콘솔 72채널 이상 ▲인이어모니터 8대 이상(필요에 따라 추가) ▲무선마이크(shure ur 사양) 30채널 이상(핸드/핀 혼합 사용) ▲콘덴서 마이크 다이내믹 마이크 30개이상 ※풀편성 국악 오케스트라 공연 예정 ▲공연진행을 위한 악기 및 장비 일체(무대용 의자, 보면대 등) ○ 영상 ▲중계용 LED 픽셀 3mm급 센터 500인치 300인치 이상 좌·우 별도 설치 ▲HD급 중계시스템 (자막기, 스위처 포함) ▲지미짚을 포함한 중계카메라 4대 이상 ▲영상디자인 등 기타 필요 물품 ○ 전기(발전차) ▲조명용 발전차 250KW 이상급 무소음 발전차 1대 ▲음향/영상용 150KW 이상급 무소음 발전차 1대 ▲기타 필요한 전기는 발전차로 사용 ○ 모든 시스템 콘솔 운영을 위한 전문 오퍼레이터 배치

구 분	세 부 내 용
주무대	
단원각 무대 _10.25.(일) 1일만 운영	○ 음향 ▲중소형 라인어레이 스피커10kw (스탁설치 방수가능,소형 컬럼스피커제외) ▲디지털믹서 32채널 ▲무선마이크 10 채널(Shure ur급) ▲모니터스피커 4개이상 ▲오퍼레이터상주 

구 분	세 부 내 용
시설·시스템	○ 전체 축제장 구성 및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각종 체험 및 홍보 등을 위한 MQ텐트 설치 및 비품 렌탈 등 ▲MQ텐트(50동 이상), 테이블(1~2), 의자(4개 이상), 현수막(각 1점) ○ 축제 운영을 위한 시설(편의시설, 프로그램 시설 등) 일체 ▲무대, 음향, 조명, 영상 등을 위한 운반·설치·철거·유지관리 ○ 축제장 현장 안내 및 홍보 현수막, 배너 등 제작 운영 ▲그 외 운영사가 제안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전기(발전차) ▲발전차 250KW 이상급 무소음 발전차 1대 ▲150KW 이상급 무소음 발전차 1대 ▲축제 운영에 필요한 간선 작업 ※운영 물품은 10% 이상 예비로 준비 ※운영 물품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축제장 조성·운영	○ 축제 장소 및 주변(진입로 등)을 고려한 공간 디자인 및 다양한 공간 활용방안 제안 ○ 축제 장소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관리·운영(종합안내소, 미아보호소, 수유실, 관람객 쉼터, 임시화장실 등) ○ 축제장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제거 및 축제 종료 후 원상복구 진행 등 ○ 주차 안내 및 교통 통제 계획 수립(주차장 통제 등) ○ 비상 상황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인력, 물품 적정 배치 ○ 기상 상황(우천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및 현장 운영 ○ 축제 전/후 청소계획 수립 및 운영 ○ 그밖에 축제장 조성·운영을 위한 모든 업무 일체
인력 운영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섭외 및 운영 ○ 운영 인력 업무별 그룹 구성 및 배치계획 수립 ○ 인력 수요(리허설, 축제일 등) 및 운영 관리계획 수립 ○ 축제 투입 인력 업무 및 안전관련 사전 교육 후 배치·관리 ○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 업무 협의 및 관리·운영 ○ 제안 프로그램과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의 배치 및 운영 ○ 각 과업 분야별 담당자 지정 및 해당 분야 경력 제시 ▲무대, 음향, 조명, 영상, 중계, 구조물 등 ○ 축제의 세부계획에 따른 사전 준비에서 축제 종료시까지의 인력 및 운영 ▲교통, 주차, 경비, 미화, 안전, 야간경호 등

구 분	세 부 내 용
안전방안	○ 안전관리계획(재해대처계획) 수립 운영(관련 법규 및 조례 등 준수하여 계획 수립 운영, 안전대책 미흡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재해대처계획서 작성(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참조) ※ 별첨1 (재해대처계획 검토 체크리스트를 고려하여 작성) ○ 축제 진행 일체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운영 ▲가입조건: 대인배상(인당 2억, 사고당 5억), 대물배상(사고당 5억), 구내치료비(인당 1백, 사고당 5백)
홍보방안	○ 홍보 인쇄물(포스터, 가로등배너, 각종 현수막 등 제작) ※ 인쇄물 시안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인쇄물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만족도 조사(평가항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되, '발주기관'의 조정 필요시 적용하여야 함.)
과업의 일반지침 및 기타	○ 과업 수행, 보고 및 업무협의, 책임, 보안, 만족도 조사 등 최종 결과물 제출까지의 모든 업무 ○ 그 외 발주처가 요청하는 내용

- 행사장 보안 경비 업무 및 인원

구분	내용
주차장 차량 안내	주차장내 차량 유도를 통해, 원활한 소통을 지원한다.
도난 및 시설 관리	야간 시간대(비공연 시간 포함) 축제 운영 물품 및 주요 시설물의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순찰을 시행한다.
아티스트 안전 관리	개폐막 대중가수 공연에 따른 가수 안전 관리를 지원한다.
관람객 안전	개폐막 공연시 다중인파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 인원 및 업무

일자	시간	인원	업무
10월 21일(목)	심야(22:00 ~ 익일 10:00)	2	시설물 보안 관리
10월 22일(금)	주간(10:00 ~ 18:00)	5	차량 유도, 아티스트 가드, 관람객 안전 관리
	야간(18:00 ~ 22:00)		
	심야(22:00 ~ 익일 10:00)	2	시설물 보안 관리
10월 23일(토)	주간(10:00 ~ 18:00)	10	차량 유도, 아티스트 가드, 관람객 안전 관리
	야간(18:00 ~ 22:00)		
	심야(22:00 ~ 익일 10:00)	2	시설물 보안 관리
10월 24일(일)	주간(09:00 ~ 18:00)	20	차량 유도, 아티스트 가드, 관람객 안전 관리
	야간(18:00 ~ 22:00)		

※ 경비 업무는 ‘발주처’와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VII

과업수행 지침

1. 기본원칙

- 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안산문화재단 : “발주기관” / 용역수행업체 : “과업수행자”
- 나. 본 과업은 제안서, 추가 협상안, 과업지시서 등을 포함하여 예산회계법 등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다. 본 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과업에 포함할 수 있음.
- 라.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짐.
- 마.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바. 과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 “과업수행자”가 배상의 책임을 짐.
- 사. 계약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아.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제안된 사업의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자.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업관리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 가. 착수 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 1)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 2) 축제 세부계획 제시(실행을 염두에 둔 구체적 일정)
 - 3) 프로그램별 참여 인력 및 조직 편성표
 - 4)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나. 중간 보고 : 사업추진 공정 50% 진행 시
 - 1) 과업 추진 현황 및 내용 공유
 - 2) 축제 기획단, 참여부스, 출연진 및 전체 내용 공유
 - 3) 각종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한 논의 등
 - 다. 최종 보고 : 행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1) 수행결과 보고
 - 2) 개선 및 보완사항 제언
- ※ 필요시, 용역수행 업체는 발주처와 수시로 점검회의 진행

3. 사업 일정

- 가. 축제 장소 셋팅: 2026. 10. 19. ~ 2026. 10. 22.
 - 현장 안전관리 심의 전 모든 축제 준비가 완료되어야 함.
- 나. 축제 진행: 2026. 10. 23. ~ 2026. 10. 25.
- 다. 축제 철수: ~ 2026. 11. 6.

4. 이행,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 다. 관람객 등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행사장에 대하여는 안전요원 배치 등 철저한 사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재점검하여야 함.
- 라.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행사 기간 내 행사에 동원된 재물 손해 · 분실, 진행요원 · 참가자 · 기타 제3자의 인명피해 · 인적상해 등 기타 행사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손실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행사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험 가입은 행사개최 기간 최소한 15일 전에 가입 · 제출

5.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가. 본 과업은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다.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함.
- 라. “과업수행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제안서 및 협상 결과 등의 내용을 포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행계획서에는 추진계획, 추진일정표, 프로그램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예산집행계획, 참여자 인적사항, 보안각서 및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포함.
- 바. 과업 수행 중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 사.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기관”은 적극 지원함.
- 아. 용역과업의 일관성·책임성 등 효과적인 사업수행 체계 확보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함.
- 자. 과업 특성 상 행사내용 변경 등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차.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 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교체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함.
- 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타. 사업세부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예산집행계획 변경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 과업종료 일반사항

- 가. 과업수행의 종료는 최종납품물이 납품되어 검수가 완료된 때로 함.
- 나. 과업이 종료된 후 과업내용에 오류가 발견될 시 과업수행기관은 그 부분을 재실시 하여야 함.
-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게 과업수행과정 또는 과업결과로 인해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지어야 함.
- 라.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이 끝난 후에도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해야 함.

2. 최종성과물

구 분	내 용	비고
행사 결과보고서	- 행사 추진과정 정리 - 사업개요, 진행과정에 대한 세부 기록 - 행사관련 각종 결과, 홍보 실적 등 - 참여자 인터뷰 및 만족도 조사 등 - 과업 추진 보고자료, 추진과정의 전반적인 서면 자료	30부
전산저장장치 (USB 등)	- 과업 추진 보고자료, 추진과정의 전반적인 서면 자료	1개
	- 행사 전반 사진, 영상, 디자인 파일 등 미디어 자료 등	1개

-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및 행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소유권과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발주기관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함.
- 나.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제반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수행하여야 하며, 위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함.

1.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나.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 기간 내에 세부행사 집행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 수행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내용, 용역 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마. 본 제안서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천재지변,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난상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코로나19 등 포함)의 발발 또는 확산, 감염병의 장기화 또는 종식되지 아니한 경우 등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 또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정상적인 행사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사 취소 또는 변경, 행사 규모 축소 등을 결정할 수 있음.
- 사. 또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축제 취소 추진 시, 계약 이후 시점부터 축제 취소 시점까지 프로그램 기획, 유치, 장비 임차 등에 소요된 기 지출 사업비에 대한 정산 추진 후 사업을 종료한다. 단, 항목별로 지출된 실비용만 지급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영수증, 계좌이체 등)가 증빙될 때 적용한다. (공인회계사의 회계 원가검사 必) 또한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과업중단,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등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 아. 행사 축소, 변경으로 인한 프로그램, 과업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수행 결과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2.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과업중단 지시,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손해배상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처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